제266회 정례회
2007. 12. 14.(금)

심 사 보 고 서

❑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07. 12. 14.(금)
제266회 정례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정윤숙 의원외 6인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7년 11월 20일

○ 회부일자 : 2007년 11월 22일

다. 상정일자 :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

○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(2007.12. 3) 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 : 산업경제위원회 정윤숙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2007. 4. 26. 「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」이 개정·시행되어 「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」에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○ 근거법령의 명칭을 「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「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」으로 변경(안 제1조)

○ 협의회의 기능을 그 밖에 지역경제 및 지역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정함(안 제2조).

○ 협의회의 구성위원을 15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변경하고,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도지사로 변경(안 제3조)

○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에 도의회 의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추가(안 제9조)

○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.

3. 검토보고 요지

(산업경제전문위원 : 최영배)

○ **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** 2000년 10월 20일 제정된 후 2006년 1월 13일에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

-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이 개정·시행되어 「충청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」에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,

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○ 다만, 본 조례안은 의원입법 발의로 개정되는 조례임을 감안할 때 조례 개정후 집행부에서 시행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의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조례 제 호

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1조중 “「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」”으로 한다.

제2조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으로 하고, 동조제3호중 “기타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”을 “그 밖에 지역경제 및 지역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사항”으로 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

제3조(구성) ①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,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.

1. 도 단위의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자
2. 도 단위의 사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자
3. 도 고용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
4. 도내 지방노동 관서를 대표하는 자
5. 도의회 의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
6. 그 밖에 노사전문가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④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기업지원팀장이 된다.

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협의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와 근로자 및 사용자가 노사협력증진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사화합과 지역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」 ----------.
제2조(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 1. ~ 2. (생 략) 3. 기타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	제2조(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그 밖에 지역경제 및 지역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사항
제3조(구성) ①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,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1.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자	제3조(구성) ①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위원장은 도지사가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,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. 1. 도 단위의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자

현 행	개 정 안
2. 사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자 3. 도를 대표하는 자 4.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 5. 노동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경제과장이 된다. 제4조 ~ 제5조 (생 략) 제6조(회의) ① ~ ③ (생 략) 〈신 설〉 제7조 ~ 제11조 (생 략)	2. 도 단위의 사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자 3. 도 고용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 4. 도내 지방노동 관서를 대표하는 자 5. 도의회 의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6. 그 밖에 노사전문가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기업지원팀장이 된다. 제4조 ~ 제5조 (현행과 같음) 제6조(회의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. 제7조 ~ 제11조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 발췌

□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

제19조(지역노사정협의회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의 노사정협력증진을 위하여 노사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.

②위원회는 지역노사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지역노사정협의회의 구성·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

제16조(지역노사정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)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지역노사정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지역노사정협의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며, 지역노사정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.

1.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
2.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
3. 공익을 대표하는 자
4. 당해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자
5. 당해지역의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노사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
1. 지역내 노사정협력방안에 관한 사항
2. 지역내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지역경제 및 지역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사항

④지역노사정협의회의 분과협의회, 사무국 등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